

다.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고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함
 - 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3) 위탁 사무내용
 - 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현장 순회방문지도
 -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다) 기타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4) 위탁 시설 개요
 - 가) 위탁 현황

시 설 명	고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 업 량 (등록관리현황)	24개소(어린이집 11, 아동복지시설 12, 청소년시설 1)	
개 소 일	2017. 5. 29.	
수탁기관명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소 재 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34(농어업인회관 3층)	
위 탁 기 간	1차: 2017. 5. 29. ~ 2019. 12. 31. 2차: 2020. 1. 1. ~ 2022. 12. 31. 3차: 2023. 1. 1. ~ 2025. 12. 31.	
연 간 예 산 (국 50%, 도 15%, 군 35%)	2017	74,000천 원(국37,000 도11,100 군25,900)
	2018 ~ 2019	100,000천 원(국50,000 도15,000 군35,000)
	2020 ~ 2022	118,600천 원(국59,300 도17,790 군41,510)
	2023 ~ 2024	118,600천 원(국59,300 도17,790 군41,510)
	2025	138,000천 원(국69,000 도20,700 군48,300)
직 원 수	3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5) 위탁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가) 선정방법: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심사를 통한 선정)

나) 수탁기관 자격 범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의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신청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 신청기관의 급식관련 사업 추진 실적
-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회의실, 교육장, 조리실 등)의 설치 계획 방안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위탁예산: 828,000천 원 * 물가상승 대비 추정

구분	예산액	국비(40%)	도비(18%)	군비(42%)	비고
계	828,000	345,000	144,900	338,100	
2025년	138,000	69,000	20,700	48,300	국50%, 도15%, 군35%
2026년	170,000	68,000	30,600	71,400	
2027년	170,000	68,000	30,600	71,400	
2028년	170,000	68,000	30,600	71,400	
2029년	180,000	72,000	32,400	75,600	

나) 산출근거

(단위: 천 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계		170,000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2,800(팀장 7호봉)*1개월+2,200(팀원 4호봉)*12개월= 29,200 ○ 대체인력 2,100(팀원 1호봉)*11개월= 23,100 ○ 급식비 140*2명*12개월 = 3,360 ○ 직무수당 125*2명*12개월 = 3,080 ○ 직책수당 150*1명*12개월 = 1,800 ○ 초과근무수당 300*2명*12개월 = 7,200 ○ 명절휴가비 400(팀원)*2명*2회 = 1,600 ○ 퇴직적립금 10 	79,340
여비	○ 관내 3,400 + 관외 600	4,000
직무수행경비	○ 센터장(비상근) 활동비(1,200*12개월)	14,400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기 임차료 = 2,600 ○ 사무실 임차료 = 2,400 ○ 피복비 = 150 ○ 공공요금(전기요금, 인터넷·전화요금) = 2,000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15,000 ○ 회의비 및 전문가 활용비 = 10,000 ○ 재료비(레시피 개발 조리, 조리교육 등 재료비) = 4,000 ○ 기타운영비(팀운영비, 학회참가비, 보수교육 경비) = 9,000 ○ 복리후생비(4대보험 법인부담금) = 7,000 ○ 사무용품 구입비 = 500 ○ 인쇄비 및 유인비 = 1,500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14,450 	68,600
유형자산	○ 사무실 집기 구입비 = 3,000	3,000

8)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 본 동의안은 고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고,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에게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 제공이 중요한 사항으로 고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10. 20. 수정가결

붙 임 1. 「고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2. 「고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고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 제안서

의안번호	제3013호 관련
------	--------------

제안연월일	2025. 10. 20.
발 의 자	우정욱 의원

1. 수정이유

양질의 사업수행과 서비스 편차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수정함.

2. 수정내용

동의안 내용중 위탁기간을 “2026. 1. 1. ~ 2030. 12. 31.(5년)” 을
“2026. 1. 1. ~ 2028. 12. 31.(3년)” 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마. 위탁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마.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의안번호	제3013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10. 2.

고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3013호
----------	--------

제출연월일: 2025. 10. 2.

제출자: 고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고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2023. 1. 1. ~ 2025. 12. 31.)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이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근거

-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 마. 2025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위탁계약 및 재위탁)
- 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고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1) 어린이·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함
- 2)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내용

- 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현장 순회방문지도
 -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3) 기타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위탁 시설 개요

1) 위탁 현황

시 설 명	고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 업 량 (등록관리현황)	24개소(어린이집 11, 아동복지시설 12, 청소년시설 1)	
개 소 일	2017. 5. 29.	
수탁기관명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소 재 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34(농어업인회관 3층)	
위 탁 기 간	1차: 2017. 5. 29. ~ 2019. 12. 31. 2차: 2020. 1. 1. ~ 2022. 12. 31. 3차: 2023. 1. 1. ~ 2025. 12. 31.	
연 간 예 산	2017	74,000천 원(국37,000 도11,100 군25,900)

(국 50%, 도 15%, 군 35%)	2018 ~ 2019	100,000천 원(국50,000 도15,000 군35,000)
	2020 ~ 2022	118,600천 원(국59,300 도17,790 군41,510)
	2023 ~ 2024	118,600천 원(국59,300 도17,790 군41,510)
	2025	138,000천 원(국69,000 도20,700 군48,300)
직 원 수	3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 1억 사업 규모 센터는 직원을 총 3명 둘 수 있음(2025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마. 위탁기간: 2026. 1. 1.~2028. 12. 31.(3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1) 선정방법: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심사를 통한 선정)

2) 수탁기관 자격 범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의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수탁기관 선정 기준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신청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 신청기관의 급식관련 사업 추진 실적
-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회의실, 교육장, 조리실 등)의 설치 계획 방안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위탁예산: 828,000천 원 * 물가상승 대비 추정

구분	예산액	국비(40%)	도비(18%)	군비(42%)	비고
계	828,000	345,000	144,900	338,100	
2025년	138,000	69,000	20,700	48,300	국50%, 도15%, 군35%
2026년	170,000	68,000	30,600	71,400	
2027년	170,000	68,000	30,600	71,400	
2028년	170,000	68,000	30,600	71,400	
2029년	180,000	72,000	32,400	75,600	

2) 산출근거

(단위: 천 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계		170,000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2,800(팀장 7호봉)*1개월+2,200(팀원 4호봉)*12개월= 29,200 ○ 대체인력 2,100(팀원 1호봉)*11개월= 23,100 ○ 급식비 140*2명*12개월 = 3,360 ○ 직무수당 125*2명*12개월 = 3,080 ○ 직책수당 150*1명*12개월 = 1,800 ○ 초과근무수당 300*2명*12개월 = 7,200 ○ 명절휴가비 400(팀원)*2명*2회 = 1,600 ○ 퇴직적립금 10 	79,340
여비	○ 관내 3,400 + 관외 600	4,000
직무수행경비	○ 센터장(비상근) 활동비(1,200*12개월)	14,400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기 임차료 = 2,600 ○ 사무실 임차료 = 2,400 ○ 피복비 = 150 ○ 공공요금(전기요금, 인터넷·전화요금) = 2,000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15,000 ○ 회의비 및 전문가 활용비 = 10,000 ○ 재료비(레시피 개발 조리, 조리교육 등 재료비) = 4,000 ○ 기타운영비(팀운영비, 학회참가비, 보수교육 경비) = 9,000 ○ 복리후생비(4대보험 법인부담금) = 7,000 ○ 사무용품 구입비 = 500 ○ 인쇄비 및 유인비 = 1,500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14,450 	68,600
유형자산	○ 사무실 집기 구입비 = 3,000	3,000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연번	검토기준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 군에서 직영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연계운영에 대해 검토한 결과 두 센터의 목적, 주요기능, 관할 부처 등이 상이하여 통합 운영은 불가능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어린이, 사회복지시설)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성이 높은사업이며, 지역 내 기준이 충족할 시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관련 법령에 의거 운영되므로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직영 체제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 증가, 운영 경직성, 행정비용 증가 등 효율성이 떨어짐 -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하고, 적정비용으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가능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및 위생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이 존재하고 실질적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음 - 맞춤형 식단 구성과 급식지도 등 역량이 특화되어 있음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매년 감독·지도 및 평가를 실시하므로 성과 측정이 용이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결산, 정보공시, 정기적인 지도·점검,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서 급식위생 및 영양 관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4. 추진일정(안)

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5. 10. ~ 11.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 심사)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2025. 11.

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2025. 11.

라. 심사결정 및 통지: 2025. 12.

마.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2025. 12.

5. 기대효과

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기여

6. 참고사항

가. 센터등록 급식소 현황 및 주요 운용 실적

나. 관계 법령

참고1

센터 등록 급식소 현황 및 주요 운영실적

○ 센터등록 급식소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시 설 수	28개소	29개소	26개소	23개소
원 아 수	935명	815명	735명	644명

※ 50인이하 소규모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 현황: 9개소/133명

○ 주요 운영실적

(‘25. 7월 기준)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위생·안전 순회방문		99회	101회	135회	66회
영양 순회방문		58회	59회	45회	11회
급식지원	식단제공	96회 (매월 8종)	144회 (매월 12종)	144회 (매월 12종)	96회 (매월 13종)
	표준레시피	96회	144회	144회	91회
	위생·안전· 가정통신문	24건 (매월 2종)	24건	24건	16건 (매월 2종)
대상자별 교 육 (방 문)	어린이	51회	55회	35회	22회
	원장		29회	12회	12회
	조리원	103회	105회	98회	58회
	교사		28회	243회	12회
대상자별 교 육 (집 합)	어린이				
	원장	1회	1회	1회	1회
	조리원				
	교사	1회			
	학부모	1회			
부모현장참관프로그램		5회(대면)	1회(비대면) 44명 참여	5회(대면)	4회(대면)
센터홍보		6건	4건	5건	9건
운영위원회		2회	2회	2회	1회

참고2 관계법령(발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 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

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2025. 28p]

- 위탁계약 및 재위탁 -

○ 위탁 계약 체결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법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센터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도 또는 시·군구 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수탁기관 계약 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 하거나, 기존 수탁기관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 기존 수탁기관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 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 한 후 재위탁을 할 수 있다.
 - * 전문지역센터제로 지정된 경우 재위탁 평가시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 수탁기관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할 때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시 고용을 포함한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 * 다만, 직원채용 공고 실시여부, 근무기간 연계 등은 지자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